



# [필수] 보험금 청구를 위한 상세 동의서



귀하는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 및 조회, 제공에 관한 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으며, 개인의 신용도 등을 평가하기 위한 목적 이외의 개인(신용)정보 제공 동의는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본 동의는 '보험금 청구'를 위해 필수적인 사항이므로 동의를 거부하시는 경우 관련 업무수행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1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수집·이용 목적	- 보험사고·보험사기 조사 및 보험금지급·심사(손해사정 또는 의료자문 포함) - 보험금청구서류 접수대행 서비스 및 교통사고 처리내역 발급 간소화 서비스 - 민원처리 및 분쟁대응, 금융거래 관련 업무
보유 및 이용기간	- <b>동의일로부터 거래 종료 후 5년까지</b> (단, 다른 관련 법령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법령상의 보존기간을 따름) 위 보유 기간에서의 거래 종료일이란 "①보험계약 만기, 해지, 취소, 철회일 또는 소멸일 및 ②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 완성일(상법 제662조), ③채권·채무 관계 소멸일 중 가장 나중에 도래한 사유를 기준으로 판단한 날"을 말한다.

## 수집·이용 항목

①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위 <u>고유식별정보</u>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input type="checkbox"/> 동의함
▲ 민감정보	피보험자의 질병·상해에 관한 정보(진료기록, 상병명 등), 보험사고 조사(보험사기 포함) 및 손해사정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경찰, 공공·국가기관, 의료기관 등으로부터 본인의 위임을 받아 취득한 각종 조사서, 증명서, 진료기록 등에 포함된 개인(신용)정보 포함) 위 <u>민감정보</u>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input type="checkbox"/> 동의함
② 개인(신용)정보 ↳ 일반개인정보 ↳ 신용거래정보	성명, 주소, 생년월일, 이메일, 유·무선 전화번호, 성별, 국적, 직업, 피보험자와 수익자의 관계, 국내거소신고번호 금융거래 업무 관련 정보(보험금 지급계좌 등), 보험계약정보(상품종류, 기간, 보험가입금액 등), 보험금정보(보험금 지급사유, 지급금액 등) 위 <u>개인신용정보</u>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input type="checkbox"/> 동의함

## 2 국외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제공받는 자	- 국외 재보험사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	- 재보험금 지급·심사
보유 및 이용기간	-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 달성할 때까지(관련 법령상 보존기간을 따름)

## 제공 항목

③ 개인(신용)정보 ↳ 일반개인정보 ↳ 신용거래정보	성별, 연령, 생년월일 보험계약정보(상품종류, 기간, 계약시작일, 보험가입금액, 계약변경내용 등) 위 <u>개인신용정보</u>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input type="checkbox"/> 동의함
------------------------------------	--



## 3 국내 제공에 관한 사항

제공받는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공기관 등 : 금융위원회, 국토교통부, 금융감독원, 국세청, 보험요율산출기관 등 법령상 업무 수행기관(위탁사업자 포함)</li> <li>-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 한국신용정보원</li> <li>- 보험회사 등 : 생명·손해보험회사, 국내 재보험사, 공제사업자, 체신관서(우체국보험)</li> <li>- 금융거래기관 : 계좌개설 금융기관, 금융결제원</li> <li>- 계약관계자 : 피보험자, 보험금 청구권자</li> <li>- 보험협회 등 : 생명·손해보험협회</li> <li>- 신용정보회사 : NICE평가정보(주)</li> </ul>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공기관 등 : 법령에 따른 업무수행(위탁업무 포함)</li> <li>-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 개인(신용)정보 조회, 신용정보의 집중관리 및 활용 등 법령에서 정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의 업무 수행, 교통사고처리내역 발급 간소화서비스</li> <li>- 보험회사 등 : 중복보험 확인 및 비례보상, 재보험금 청구</li> <li>- 금융거래기관 : 금융거래 업무</li> <li>- 계약관계자 : 손해사정내용 관련 정보 제공</li> <li>- 보험협회 : 보험금 지급·심사 관련 업무지원(보험금 청구서류 접수 대행 서비스 등)</li> <li>- 신용정보회사 : 신용도판단, 본인확인, 통계작성, 연구·분석, 정책자료로 활용 등 법령에서 정한 신용정보회사의 업무 수행</li> </ul>
보유 및 이용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 달성할 때까지(관련 법령상 보존기간을 따름)</li> </ul>

\* 외국 재보험사의 국내지점이 재보험금 청구 등 지원 업무를 위탁하기 위한 경우 별도의 동의 없이 외국 소재 본점에 귀하의 정보를 이전할 수 있습니다.

## 제공 항목

고유식별정보	<p>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p> <p>위 <u>고유식별정보</u>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input type="checkbox"/> 동의함</p>
민감정보	<p>피보험자의 질병·상해에 관한 정보(진료기록, 상병명 등), 보험사고 조사(보험사기 포함) 및 손해사정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경찰, 공공·국가기관, 의료기관 등으로부터 본인의 위임을 받아 취득한 각종 조사서, 증명서, 진료기록 등에 포함된 개인(신용)정보 포함)</p> <p>위 <u>민감정보</u>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input type="checkbox"/> 동의함</p>
개인(신용)정보	<p>성명, 주소, 생년월일, 이메일, 유·무선 전화번호, 성별, 국적, 직업, 피보험자와 수익자의 관계, 국내거소신고번호</p> <p>금융거래 업무 관련 정보(보험금 지급계좌 등), 보험계약정보(상품종류, 기간, 보험가입금액 등), 보험금정보(보험금 지급사유, 지급금액 등)</p> <p>위 <u>개인(신용)정보</u>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input type="checkbox"/> 동의함</p>

\* 업무위탁을 목적으로 개인(신용)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별도의 동의 없이 업무 수탁자에게 귀하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https://life.miraeasset.com>] 에서 확인 가능)





# 보험금 심사 절차 안내

## 보험금 지급심사 절차



## 보험금 청구시 알아 두셔야 할 사항

### 보험금 청구서류 제출방법

- 접수방법 : 홈페이지, 모바일, 팩스, 우편, 고객센터 방문 접수 가능합니다.
- ① 홈페이지, 모바일 : 500만원 이하(실손 금액제한 없음)
- ② 팩스 : 500만원 이하
- ③ 우편, 방문 : 금액제한 없음 (500만원 이하 사본 제출 가능)
- 홈페이지, 모바일, 팩스 접수의 경우 사망보험금 청구가 제한됩니다.
- ※ 자세한 안내는 홈페이지(<https://life.miraeasset.com>)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 보험금 지급조사 요청에 대한 동의

- 표준약관 규정에 의거 '계약 전 알릴의무 위반 여부' 및 '보험금지급여부 결정'을 위한 의료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찰서 등 관공서에 대한 회사의 서면 조사 요청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실 확인이 끝날때까지 회사는 보험금 지급지연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회사는 서면조사에 대한 동의 요청 시 조사목적, 사용처 등을 명시하고 설명합니다.

### 손해사정 및 보험사고 조사에 관한 사항

- 보험회사는 보험업법 제185조에 따라 손해사정사를 고용하여 손해사정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게 하거나,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장을 업으로 하는 자를 선임하여 그 업무를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 보험계약자 등은 별도로 손해사정사를 선임할 수 있으며, 보험계약자 등이 따로 손해사정사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 보험회사에 소속된 손해사정사 또는 보험회사와 위탁계약이 체결된 손해사정업자가 손해사정장을 하게 됩니다.
- 보험회사에서 손해사정사를 선임한 경우 그 비용은 회사에서 부담하나, 별도로 손해사정사를 선임하신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보험회사가 손해사정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 ① 보험계약자 등이 손해사정이 착수되기 이전에 당사에 손해사정사의 선임 의사를 통보하여 동의를 얻은 때
    - ② 정당한 사유없이 당사가 보험사고 통보를 받은 날(접수가 완료된 날)부터 7일이 경과하여도 손해사정에 착수하지 아니한 때
  2. 보험계약자 등이 손해사정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 ① 당사가 고용 또는 선임한 손해사정사의 사정 결과에 승복하지 아니한 때
    - ② 보험계약자 등이 보험회사와는 별도로 손해사정사를 선임하고자 할 때

### 손해사정서의 교부

- 보험회사로부터 손해사정업무를 위탁 받은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는 손해사정업무를 수행한 후, 손해사정서를 작성한 경우에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금청구권자에게 손해사정서를 작성하여 드리며, 그 중요한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 보험금 지급지연 및 부지급 결정에 대한 안내

- 지급 지연 시, 그 사실을 고객님의 요청하신 방법(문자메시지, 우편 등)으로 안내하여 드리고, 약관상 규정된 내용에 따라 지연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합니다.
- 약관에서 정해진 지급 기일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못할 것으로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에는 보험금 가지급제도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 받을 수 있으며, 가지급제도 신청은 당사 고객센터(☎1588-0220)로 가능합니다.
-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 그 사유와 근거를 안내하여 드립니다.

### 의료심사

-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 3 자는 의료법 제 3 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하며, 보험금 지급 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보험사간 치료비 분담 지급(비례보상 적용)

- 의료비 실비를 보장하는 상품에 복수로 가입하신 경우, 보험약관에 따라 비례보상원칙을 적용하여 보험금을 분담하여 지급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접수대행신청서를 작성하시면 타사에 접수 대행이 가능합니다.
- 타 보험사에 가입되어 있는 실손보험계약은 생명보험협회 및 손해보험협회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 보험금청구권의 소멸

- 보험수익자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지체없이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상법 제662조에 의거 보험금청구권을 3년 이내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됩니다.

### 보험금 청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 당사의 지급심사결정에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 고객센터(☎ 1588-0220)로 유선통보하시거나, 당사 홈페이지 [전자민원접수] 및 우편으로 통보하여 주시면 재심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우편 : 서울시 영등포구 선유로 49길 23 아이에스비즈타워 2차 13층 에이원손해사정 미래에셋생명팀 (우편번호 : 07208)

### 보험금심사 담당 부서 및 연락처

- 담당부서 : 보험금서비스팀 (문의처 : 고객센터 1588-0220)
- 담당자는 접수완료 후 확정되며 당사 홈페이지 및 담당 FC, 고객센터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 분쟁 조정절차 및 피해 구제사항 안내

- 보험계약 및 보험금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 국번없이 1332)으로 조정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주요안내 내용

- 상기 절차에 따라 지급심사가 이루어지며, 접수하신 보험금 청구서류가 심사과정에서 추가로 필요한 경우에는 서류를 추가요청 드릴 수 있습니다.
- 보험사기는 범죄행위로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 의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당사 홈페이지(<https://life.miraeasset.com>)에 접속하시면 보유계약 확인, 보험금 청구, 청구서류 안내 및 진행현황 조회 등의 업무를 쉽고 간편하게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 보험금 청구서류 안내



구분	청구서류		발급처	
공통	필수	① 사고보험금청구서 (보험금 청구를 위한 필수 동의서, 계좌번호 포함) ② 청구인 신분증 사본 (지문정보 제외)	회사양식	
	수익자 관련추가	수익자 (필요 시)추가서류 ① 가족관계 확인 필요 시 (배우자, 자녀 등의 보장상품, 수익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미성년자의 기본증명서(상세) 등 ② 대리청구서 (청구사유에 사망/장해/진단이 포함되는 경우만 작성, 입원/수술/실손 등 생략가능) - 직계가족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 제 3자 : 위임장, 보험금 청구권자의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보험금 청구권자의 보험금청구를 위한 필수 동의서 * 보험금청구권자 : 피보험자, 수익자	주민센터	
	재해 입증서류 (택1)	재해사고 시 사고입증서류 ① 교통사고 : 공공기관(경찰서, 소방서 등), 손해보험사, 공제조합(버스, 화물, 택시 등) 사고사실확인서 ② 산업재해 : 산업재해처리내역서 또는 보험급여지급확인서 ③ 군인재해사고 : 공무상병인증서 ④ 의료사고 등 법원분쟁 : 법원판결문 ⑤ 기타 재해사고 : 공공기관(경찰서, 소방서 등) 사고사실확인서 * 확인서류 발급불가 재해사고 : 병원초진차트 등 재해사고 증명서류 및 보험금 청구서상 재해사고 내용 기재	서류별 상이	
사망	필수	1) ①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원본 (사망진단서 원본 제출 시 기본증명서 제외) 또는 ② 피보험자 기본증명서 원본 (상세) (사망사실 기재) +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사본 (원본대조필 포함) * 책임준비금(500만원 이하) 또는 기납입보험료만 지급되는 사망보험금 청구의 경우 :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생략가능. 단, 피보험자 기본증명서 원본 (상세, 사망사실 기재) 첨부 2) 수익자 미지정시 요청서류 - 대표수익자 1인 지정시 : 대표수익자 지정동의서(변제의무 확인란에 자필서명),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상속인 각각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또는 상속인 전원 내방시 자필서명 및 신분증 - 상속인 개별 수령시 : 변제의무 확인서(상속인 전원),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신분증	의료기관 주민센터 회사양식	
	추가	* 상속관계 확인을 위해 제적등본, 혼인증명서(상세)	주민센터	
입원	필수(택1)	① 진단서(입원기간이 기재되어야 함) ② 입퇴원확인서(진단명이 기재되어야 함)	의료기관	
통원	필수(택1)	* 진단명, 통원일자 및 기간이 포함된 서류 ① 진단서 ② 통원확인서(통원일자별) ③ 처방전 ④ 진료확인서 ⑤ 소견서 ⑥ 진료차트	의료기관	
장해	필수	① 후유장애진단서 (* 발급 전 당사 고객센터 또는 심사담당자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의료기관	
	추가	(일반)진단서로 대체 가능한 장해 ① 만성신부전 : 최초 혈액투석일, 환자상태 기재 ② 사지절단 : 절단부위, 환자상태 기재, X-ray필름 첨부 ③ 인공관절치환술 : 수술기록지(수술명, 수술일자 기재) ④ 비장·신장·인구적출 : 수술기록지(수술명, 수술일자기재) ⑤ 심장·신장·간장·폐 장기이식(부위 명시) : 수술기록지(수술명, 수술일자기재) ⑥ 장기전절제 : 수술기록지(수술명, 수술일자기재)	의료기관	
수술	필수	* 진단명, 수술명, 수술일자가 포함된 서류 ① 진단서 ② 수술확인서	의료기관	
골절	필수(택1)	* 진단명이 포함된 서류 ① 진단서 ② 진료확인서 ③ 소견서 ④ 진료차트	의료기관	
진단	공통	필수	① 진단서 (진단명, 질병분류코드, 진단일 포함)	의료기관
	암	필수	① 암 / 제자리암 / 경계성종양 : 조직검사결과지 ② 백혈병 : 골수검사결과지, 간암·폐암·췌장암 : 방사선판독지(CT, MRI) 또는 조직검사결과지	의료기관
	뇌졸중	필수	① MRI 또는 CT 판독결과지	의료기관
	급성심근경색	필수	① 관상동맥조영술결과지, 심근효소검사결과지, 심전도검사결과지, 초진기록지 또는 응급실기록지	의료기관
	치매	필수	① MMSE-K(한국형 간이인지기능 검사결과지) ② CDR(임상치매척도 검사결과지) * 발급 전 당사 고객센터 또는 심사담당자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의료기관
태아	신생아입원비	필수	① 출생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② 진단서 [진단명이 포함된 입퇴원 확인서 또는 진단명 및 입원기간이 포함된 진료확인서로 같음] ③ 입퇴원확인서(중환자실 사용시 해당기간 명시) *진단서에 입원기간(중환자실 사용기간)이 포함된 경우 제외	주민센터 의료기관
	유산/ 사산	필수	① 유산시 : 진단서 ② 사산시 : 사산증명서	의료기관
치아	치과통원	필수	① 진료비계산서(병원영수증) *정확한 심사를 위해 추가서류 요청 가능	의료기관
	치아치료	필수(택1)	① 진단서 ② 치과진료확인서 (당사 양식) * 진단명, 질병분류코드, 내원일, 치아번호, 치료종류, 치료일, 발치일자(발치한 경우가 포함되어야 함)	의료기관
기타	응급치료비	필수 추가	① 구급 및 구조증명서 ① 가족관계증명서(가족 이용 시)	소방서, 민원24 주민센터
	입원의료비	필수	① 병명 확인이 가능한 병원 서류(진단서, 입퇴원확인서 등) ② 진료비계산서(병원영수증) ③ 진료비세부내역서	의료기관
실손	통원의료비	필수	① 진단명, 통원일자 및 기간이 포함된 서류 ② 진료비계산서(병원영수증) : 일자별 진료비계산서 또는 납입확인서와 세부내역서 * 소액 통원 청구서류 간소화제도 안내 · 10만원이하 : 진료비계산서(병원영수증), 진료비세부내역서, 사고보험금청구서상 병명기재 (단, 산부인과, 비뇨기과, 피부과 제외) 1) 금액구분은 1회 청구 영수증금액의 합산을 기준으로 합니다. 2) 10만원 이하 청구건에 대해서도 보험금 지급제외대상이 많은 진료과목(산부인과, 향문외과, 비뇨기과, 피부과 등) 및 단기간내 과다청구 등 추가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별도 추가 증빙서류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3) 추가증빙서류 발급시 별도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질병분류기호가 기재된 처방전 2부를 교부 받으시기 바랍니다.	의료기관
		처방조제비	필수	① 의사처방전(병명코드기재) ② 일자별약제비계산서(영수증)

\* 고객님의 지문정보를 수집할 수 없으므로 신분증 사본 첨부시 뒷면의 지문정보 제출을 삼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족관계 확인서류는 대한민국 정부민원 포털사이트 민원24시(www.minwon.go.kr) 등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 의료기관에 대한 서류별 발급비용은 해당 의료기관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http://www.hira.or.kr) 홈페이지(병원·약국·비급여진료비정보) 참고 가능합니다.

\* 사고내용, 특성, 상품(보장내역)에 따라 추가 심사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진단서, 통원확인서, 처방전, 진료확인서, 소견서, 수술확인서, 진료차트 등에는 진단명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 청구서류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확인은 당사 홈페이지(http://life.miraeasset.com)를 접속하시면 확인 가능합니다.